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 선고 2022가단509234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강영태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정 담당변호사 이용호

변론 종결2023. 4. 4.

판결 선고2023. 5. 2.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9,517,334원 및 그 중 9,517,294원에 대하여 2022. 2. 10.부터 2022. 6. 4.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이,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는 9,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B와 피고 C 사이의 2021. 2. 1.자 증여계약을 9,58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9,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8. 1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번호 D, 보증원금 10,000,000원, 보증기한 2025. 8. 13.로 된 신용보증서(보증비율 : 100%)를 발급하여, 피고 회사가 2020. 8. 19. E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의 일반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보증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2022. 1. 1. 이후 연 8%)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구상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었다.

나. 피고 B는 피고 회사 대표자(사내이사)로서 2020. 8. 14. 원고와 사이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대신 책임경영의무(약정 제6조에서 정하는 소명자료 제공 등 부수의무 준수 포함)를 성실히 이행하고, 책임경영의무 위반시 원고의 보증잔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책임경영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책임경영의무 등) 약정인은 제1조의 보증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대신 아래에서 정하는 책임경영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1.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준수
2. 공문서, 사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부실) 자료 제출 금지
3. 업무상 횡령, 배임, 부당금품 제공 및 수수, 자금유용 등의 금지

4. 재단보증서 담보대출의 용도 외 사용금지

5. 경영에서 탈퇴 또는 이 약정체결일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1/2 이상을 처분시 재단의 동의를 받음

6. 제6조에서 정하는 부수의무의 준수

7. 기타 책임경영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 금지

제4조(책임경영의무위반과 약정인의 책임)

① 약정인은 제2조에서 정하는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제1조의 보증약정으로 발생한 보증금액의 잔액을 회수하는 것에 동의한다.

1. 재단에서 제2조 책임경영의무 위반 사실과 회수금액 및 기한을 통지하여 약정인에게 도달하면

약정인은 즉시 회수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책임경영의무위반이 아닌 것으로 재단에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제1호의 책임경영의무위반 발생사실 통지와 관련하여 약정인이 신고한 주소로 재단이 서면 통지한 경우에는 그것이 연착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도 보통의 우편물 송부 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조(부수의무)

① 약정인은 제2조의 책임경영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재단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통지하겠으며 관련 자료와 장부 열람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다.

②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주주현황, 경영진변동, 재무자료 등의 경영현황 관련자료를 재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③ 약정인은 제2조 제3호의 자금유용과 관련하여 주식투자, 부동산 투자 등 용도 외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며, 이를 점검하기 위해 재단이 대출기관의 대출금입금전용 계좌로부터 관련 금융정보를 수신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다. 피고 회사는 2021. 10. 21. 위 대출금에 대하여 분할상환 원금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 한다), 원고는 2022. 2. 10. E은행에게 9,700,534원(원금

9,580,000원 + 이자 120,53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2022. 2. 10. 위 대위변제금 중

183,240원을 회수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22. 2. 4. 피고 B에게 이 사건 약정 제6조에 따라 책임경영의무를 준수하였음을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B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 B는 2021. 2. 8. 배우자인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2. 1.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2021. 2. 8. 피고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54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대위변제한 9,700,534원(원금 9,580,000원 + 이자 120,534원)에서 2022. 2. 10.자 회수금 183,240원을 이자, 원금의 순차로 충당한 나머지 잔액 원금 9,517,294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당일 발생한 확정 지연손해금 2,085원($9,517,294 \times 0.08 / 365$) 중 원고가 구하는 40원 합계 9,517,334원 및 이 중 원금 9,517,294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2.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에 기한 상환약정금 청구권 성립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6조를 위반하여 책임경영이행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2조 제6호의 부수의무를 위반하여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약정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보증금 10,000,000원 중 원고가 감액한 나머지 9,580,000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의 목적은, 경영인을 보증의뢰인인 기업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지 않는 대신 1) 경영인의 기업경영 유인이 감소하여 부실률이 증가하는 것을 막고 책임경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인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2조 제6호, 제6조에서 정한 부수의무는, 원고가 피고 B의 책임경영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영현황을 조사할 때 피고 B가 협력할 의무에 불과하여, 내용상으로도 피고 B가 기업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경영할 의무인 책임경영의무와는 별개의 것인 점, ③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제6조의 부수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피고가 책임경영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자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인데도, 피고 B가 위 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느 경우에도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동일하게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 ④ 원고의 입장에서는 책임경영 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피고 B의 기간 내 자료제출의무 등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 B가 원고의 조사행위를 고의로 방해하였다는 등 피고 B의 행위를 책임경영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이 단순히 부수의무 위반만으로 곧바로 연대보증책임을 성립시키는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고 피고 B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형평에 어긋나고, 거래형태 등 관련 사정에 비추어보아도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체결 당시 피고 B로서 그러한 사정을 예상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인 점, ⑤ 특히 피고 B가 이 사건 보증사고 이후 비로소 이루어진 원고의 요청에 따른 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보증사고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하였다 평가할 수 없고, 그러한 부수의무 위반과 이 사건 보증사고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보증사고 후 원고의 요청에 따른 책임경영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소명요청에 관하여 피고 B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2조에서 열거하는 책임경영의무에 포함시켜 곧바로 같은 약정 제4조에 따른 책임경영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B의 부수의무 위반이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등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4조에 따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그러나 위 제3의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4조에 따라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갖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장원정

별지

1) 원고 등 보증기관이 보증서 발급시 경영인 개인의 연대채무를 입보하는 것은 2018. 4.경 정책적으로 폐지되었다.